

## NEWSLETTER

May 2020

베트남 그룹  
Vietnam Practice Group

## CONTACT



외국변호사 한윤준

T: +84.28.3827.3886  
E: [younjoon.han@leeko.com](mailto:younjoon.han@leeko.com)

외국변호사 홍성미

T: +84.9.4183.6655  
E: [sungmee.hong@leeko.com](mailto:sungmee.hong@leeko.com)

변호사 김희웅

T: 02.772.4428  
E: [heewoong.kim@leeko.com](mailto:heewoong.kim@leeko.com)

##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기업]** 베트남 정부는 2020. 3. 24., 경쟁법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No. 35/2015/ND-CP)을 개정하는 시행령(No. 35/2020/ND-CP)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5. 15. 발효될 예정입니다. 본 시행령은 “기업을 통제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베트남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의 승인을 요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베트남 총리는 2020. 4. 6., 태양광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No. 13/2020/QĐ-TTg)을 공포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20. 5. 22.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인화된 전력가격(Feed-in tariff, ‘FIT’)이 적용됩니다.
- **[투자]** 베트남 국회에서는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PPP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고, 2018. 5. 4. 자 시행령(No. 63/2018/ND-CP)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베트남 정부는 2020. 4. 8.,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는 시행령(No. 44/2020/ND-CP)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6. 1. 발효될 예정입니다. 본 시행령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기업

베트남 정부는 2020. 3. 24., 경쟁법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No. 35/2015/ND-CP)을 개정하는 시행령(No. 35/2020/ND-CP, 이하 ‘Decree 35’)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5. 15. 발효될 예정입니다.

Decree 3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시행령은 지분 인수 시 기업결합신고(economic concentration notification)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인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통제 또는 지배(controlling or governing an enterprise)”로서 다음의 각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1)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정관자본금 50% 이상을 취득
- 2)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의결권주(Voting Shares)의 50% 이상을 취득
- 3)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모든 영업 자산 또는 어느 한 영업에 관한 자산의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

- 상기 인수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피인수회사의 이사회 의 과반 또는 모든 이사, 사원총회의 의장, 법인장을 직간접적으로 선임, 해임
  - 피인수회사의 정관 변경
  - 기업 조직 형태, 업종, 지리적 위치, 사업 형태를 포함하는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결정; 해당 기업의 자본금의 조달, 할당, 활용의 형태 및 방법 선택
- 또한, 본 시행령은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한 ‘관련 시장(relevant markets)’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대체 가능성(capability of substitution in terms of suppl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또는 거래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5% 내지 10% 증가하는 경우 6개월 내 큰 비용의 증가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다른 기업이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생산을 시작하거나 해당 제품의 생산 및/또는 거래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
- 나아가, 본 시행령은 관련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련 상품 시장
    - 상품 및 서비스의 성질(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services)
    -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ingredients of products and services)
    -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distinct features of products and services)
  - 관련 지역 시장
    - 소비 관행(consumption customs)
    -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 및 시간(costs and time for customers to buy products and services)
- 본 시행령은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경쟁법 규정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합병, 신설 합병, 인수,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베트남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NCC’)에 그러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	특별 기업군			기타 기업군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기업결합 직전 회계연도 베트남 시장의 총 자산	금융기관 시장 총자산의 20% 이상	15조 VND 이상 (약 6억5,000만 USD)	15조 VND 이상 (약 6억5,000만 USD)	3조 VND 이상 (약 1억3,000만 USD)
기업결합 직전 회계연도 베트남 시장의 총매출액 또는 총매입액	금융기관 시장 총매출액 또는 총매입액의 20% 이상	10조 VND 이상 (약 4억3,000만 USD)	3조 VND 이상 (약 1억3,000만 USD)	3조 VND 이상 (약 1억3,000만 USD)
기업결합 직전 회계연도 거래가액 (베트남 역내 거래 기준)	금융기관 시장 총 거래가액의 20% 이상	3조 VND 이상 (약 1억3,000만 USD)	3조 VND 이상 (약 1억3,000만 USD)	1조 VND 이상 (약 4,300만 USD)
기업결합신고 직전 회계연도 시장 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연결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 2. 에너지

베트남 총리는 2020. 4. 6., 태양광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No. 13/2020/QĐ-TTg, 이하 ‘**Decision 13**’)을 공포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20. 5. 22.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력가격(Feed-in tariff, ‘**FIT**’)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1) 수상형 태양광 프로젝트(floating solar power project): kWh당 VND 1,783(7.69 US 센트)

2) 지상형 태양광 프로젝트(ground solar power project): kWh당 VND 1,644(7.09 US 센트)

위 신규 전력가격은 2019. 11. 23. 이전에 투자 정책 결정을 취득하고, 2020. 12. 31. 이전에 상업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됨. 그 외 프로젝트의 가격은 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됨

3)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rooftop solar power project): kWh당 VND 1,943(8.38 US 센트)

해당 신규 전력가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태양광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어야 하며, 2019. 7. 1.부터 2020. 12. 31. 사이의 발전량이 확인되어야 함

4) 다만, 닌투언성에서 진행되고 2021. 1. 1. 전까지 상업운영이 개시되는 전력망 연결형 태양광 프로젝트(grid-connected solar power project)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 정책의 혜택으로 향후 20년간 kWh당 VND 2,086(9.35 US 센트)가 적용됨

신규 전력가격은 Decision 11(No. 11/2017/QĐ-TTg)에 따른 이전 전력가격 [kWh당 VND 2,086(9.35 US 센트)]과 비교하여 상당 수준 인하되었습니다.

## 3. 투자

베트남 국회에서는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 의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PPP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고, 2018. 5. 4. 자 시행령(No. 63/2018/ND-CP, 이하 ‘**Decree 63**’)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PPP 방식에 관한 정의를 제공

■ PPP 방식이란 정부가 책임지는 제품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PPP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통한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력에 기반하여 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

### ■ PPP 프로젝트로 규정되는 인프라 투자 부문을 명시

■ 교통운수

■ 발전소 및 전력 공급망

■ 정수 공급; 배수 및 폐수; 폐수 처리

■ 주정부청사 및 사무실

■ 건강; 교육 및 훈련

■ IT 인프라

본 개정안은 Decree 63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을 삭제하였으나, 열거되지 않은 인프라 부문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총리의 승인을 받아 해당 PPP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공공투자에 관한 법에 규율되는 부문에 해당할 것
- 2) PP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정부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
- 3) 공공투자 방식보다 PPP 방식일 때에 상업적 가능성이 높을 것

#### ■ 적격 투자자

본 개정안은 기존의 투자적격 기준에 다음을 추가하였습니다.

- 현재 PPP 방식의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할 것
- 베트남 정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은 입찰 참여를 위해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
-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는 입찰 참여에 있어 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시장 참여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것

#### ■ 투자자 선정

본 개정안은 투자자 선정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하기 선정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관할기관(프로젝트 시행지역 인민위원회)은 그러한 사실을 총리에 보고하여 투자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개 입찰: 경쟁 협상 및 직접 선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적용됨
- 경쟁 협상: 국방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소수의 투자자 중에서 선정
- 직접 선정: 국방 및 정부 기밀 유지를 직접인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공 서비스 및 상품의 지속 공급을 위하여 즉시 수행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자를 직접 선정

## 4. 기타

베트남 정부는 2020. 4. 8.,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는 시행령(No. 44/2020/ND-CP, 이하 ‘Decree 44’)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6. 1. 발효될 예정입니다.

Decree 44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은행계좌 동결: 은행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신용기관에 개설된 대상기업의 은행계좌에서 벌금 상당의 금전을 몰수
- 2) 벌금 및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재산의 압류
- 3) 중요 서류, 바우처 및 전자정보를 담은 기기 등의 임시 압수; 기업 인감 임시 압수 또는 등록 철회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http://www.leeko.com)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